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0. 4. 20.

행정위원회

###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10년 4월 2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0년 4월 14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0. 4. 15) 상정 의결

###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안 동 수 )

#### 가. 제안이유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는 비상설화하고, 유사중복 기능인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물가대책위원회는 비상설화 운영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 위원은 안건발생시 위원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4조제4항)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회의개최 후 자동 해촉됨에 따라 삭제 (안 제6조)

- 위원의 해촉 사유 규정 삭제 (안 제7조)

- 비상설화 됨에 따라 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회의 개최할 수 있는 사항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정 (안 제8조)

○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하향 조정 (안 제4조제2항, 제3항)

○ 물가대책위원회와 유사중복 기능인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폐지(안 제9조)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이 현 영)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 과 영등포구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바, 시행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2호
----------	-------

제출연월일 : 2010.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내실화를 기하고자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를 비상설화 및 유사중복 기능인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하향조정하여 개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함.

##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비상설화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개최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함.

- 1) 위원은 안전발생시 위원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되는 사항을 추가(안 제4조제4항)
- 2)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회의개최 후 자동해촉 됨에 따라 삭제함.(안 제6조)
- 3) 위원의 해촉 사유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
- 4) 비상설화 됨에 따라 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회의 개최 할 수 있는 사항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정함.(안 제8조)

나.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무중심의 신중한 검토·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하향조정. (안 제4조제2항,제3항)

다. 물가대책위원회와 유사중복 기능인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폐지함(안 제9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정비 기준” 및 어문 규정에 따라 일부 용어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합 의 :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0.3.11 ~ 3.31)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사무없음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부터 제80조의3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수수료·사용료를 심의한다.

제4조제1항 중 “10인이내의”를 “10명 이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 ③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주택과장, 가로경관과장, 보건지원과장과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위촉직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위원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가관련 주무팀장이 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p>	<p>〈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0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 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0조부 터 제80조의 3에 따라 ----- ----- ----- -----.</p>
<p>제3조(기능) ① (생 략) ②위원회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 활에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p>	<p>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 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업요금·수수료·사용료를 심의한다.</p>
<p>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영등포구청 행정국장, 주민생 활지원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 장, 보건소장과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전 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4조(위원회 구성) ① ----- -----10명 이내의 -----.. ② ----- 재정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 ③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장, 주택과장, 가로경관과장, 보건지원과 장과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전문가 중에 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위촉직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위 원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6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lt;삭제&gt;</p>
<p>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p>	<p>&lt;삭제&gt;</p>
<p>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⑤ (생략)</p>	<p>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p>	<p>&lt;삭제&gt;</p>
<p>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p>	<p>제10조(간사) 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가관련 주무팀장이 된다</p>